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5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호대, 황규복, 김호평,  
노식래, 김정태, 권수정,  
문장길, 이성배, 김제리,  
김소영, 김생환, 정진철  
의원 (12명)

## 1. 제안이유

- 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서울시의 영상산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 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이사 추천, 정관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2)
- 다. 영상위원회의 사업,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서울시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기구의 조직·운영·보수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u>영상진흥기본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u>영상진흥기본법</u>」,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li> <li>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li> <li>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li> <li>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li> <li>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p>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p>

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 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기구의 조직·운영·보수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